

#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현정 의원)

의안 번호	541
----------	-----

발의연월일: 2026년 2월 25일

발 의 자 : 심현정 의원

찬 성 자 : 남진삼, 김성기, 이은미 의원

## 1. 제안이유

- 출산 가구의 수도요금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영유아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 제고와 젊은 세대의 지역 정착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제35조(요금 등의 감면) 개정
  - 감면대상에 '주민등록상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24개월 이하의 자녀가 포함된 가구' 추가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나. 예산조치 : 불임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6. 2. 10. ~ 2026. 2. 23.(14일간), 의견없음

## [조례안]

평창군 조례 제            호

###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주민등록상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24개월 이하의 자녀가 포함된 가구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5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 10. (생략)</p> <p><u>&lt;신설&gt;</u></p> <p><u>11.</u> (생략)</p> <p>② (생략)</p>	<p>제35조(요금 등의 감면) ① ----- ----- ----- -----.</p> <p>1. ~ 10. (현행과 같음)</p> <p><u>11. 주민등록상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24개월 이하의 자녀가 포함된 가구</u></p> <p><u>12.</u> (현행 제11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관계법령]

### <수도법>

#### 제38조(공급규정)

① ~ ③ (생략)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 1. 비용발생 요인

- 생후 24개월 이하 가구의 수도요금 감면 지원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평창군 연간 출생아 수는 연간 95~100명으로 출생아가 두 번째 또는 그 이상으로 태어날 경우 “다자녀 감면” 으로 기 지원, 중복지원 불가
- 출생아가 첫째아이일 경우 조례 개정 시 시행 규칙으로 가구당 5톤 감면으로 정할 예정이며, 이 때 가구당 월 약 6,600원의 예산지원이 발생, 연간 500만원 미만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

###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연락처	(033) 330 - 2363